

# 생활 속의 소방 법률 상식

## ①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[소방기본법 제21조의2 제2항]

준수사항

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

1. 주차금지, 물건 적치 금지
2. 전용구역으로 소방차 진입 시 방해금지
3.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 금지

위 반 시

1차 50만원, 2차 이상 100만원 과태료 부과



## ② 비상구 및 방화시설 등 폐쇄·훼손 금지

[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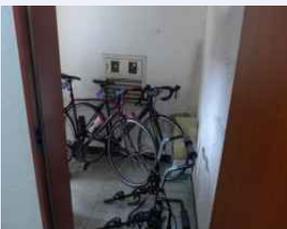
준수사항

1. 비상구, 방화문 폐쇄·훼손 금지
2. 비상구, 방화문 주위 물건 적치 금지
3. 비상구, 방화문 기능에 장애를 주는 행위 금지
4. 비상구, 방화문 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금지

위 반 시

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### <비상구 등 폐쇄·훼손 중점 단속 사항>



비상구, 피난계단 등  
장애물 적치



고의적 방화문  
개방유지



방화문 도어클로저  
임의 탈거



방화문 도어스토퍼  
(말발굽)설치

③ 소방활동 방해 금지 [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, 제24조 제1항]

준수사항

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안 된다.  
1. 위력(威力)을 사용하여 소방활동 방해금지  
2. 소방대가 현장에 출동,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금지  
3.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금지  
4. 인명구조,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 방해 금지

위 반 시

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
④ 소방활동 방해 금지 (소방대상물 · 토지 강제처분) [소방기본법 제25조 제1항]

준수사항

소방본부장, 소방서장, 소방대장은 인명구조, 화재진압 등 긴급한 경우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 제한을 할 수 있다.  
이를 방해하면 안 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을 따라야 한다.

위 반 시

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
⑤ 소방활동 방해 금지 (차량 · 물건 강제처분) [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]

준수사항

소방본부장,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 ·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.  
이를 방해하면 안 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을 따라야 한다.

위 반 시

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
⑥ 119 장난전화 금지 [소방기본법 제19조 제1항]

**준수사항** 화재, 구조,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안 된다.

**위 반 시**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⑦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·정차 금지 [도로교통법 제32조]

**준수사항** 운전자는 다음 장소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안 된다.  
1.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 
2. 소방시설, 소방용수시설,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

**위 반 시** 【승합차】 9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
【승용차】 8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


⑧ 소방용수시설, 비상소화장치 불법 사용금지 [소방기본법 제28조]

**준수사항** 1.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면 안 된다.  
2. 소방용수시설, 비상소화장치를 손상·파괴·철거 및 효용(效用)을 해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.  
3. 소방대원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면 안 된다.

**위 반 시**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
⑨ 소방자동차 우선 통행 [소방기본법 제21조 제1항~3항]

**준수사항**

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·구조·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.

**위 반 시**

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
**준수사항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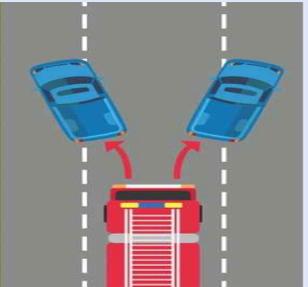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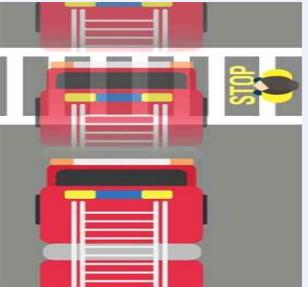
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·구조·구급 활동을 위하여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
1.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
2.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
3.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

**위 반 시**

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〈소방자동차 길 터주기 실천요령〉

일방통행(1차선)	편도 2차선	편도 3차선 이상	횡단보도(보행자)
 <p>일방통행</p>			
우측 가장자리로 일시정지(서행운전)	2차선으로 양보 및 서행운전	좌·우측으로 양보 및 서행운전	소방자동차가 보이면 잠시 멈춤